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완화 등〉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9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저소득 노인에 대한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완화 등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방식	5
다. 검토의견	9
라. 관계 기관 의견	14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9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9.
- (3) 회 부 일 : 2025. 10.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저소득 노인에 대한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완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5%로 우선 낮추고, 2030년 1월 1일부터는 10%가 되도록 하향하되(안 제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이로 인한 소득 역전을 방지하도록 하고(안 제8조제4항),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1)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실효된 조문인 제5조의2를 삭제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 -----제2항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	개정안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u>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u> 2. 3. (생략) ⑥ ⑦ (생략) <u>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u>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략) <u><신설></u>	⑤ ----- ----- ----- ----- ----- -----. 1. <u>기준연금액</u> 2. 3. (현행과 같음) ⑥ ⑦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그 배</u>

현행	개정안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 ----- ----- ----- ----- -----. ④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 비율에서 제2항에 따른 감액 비율을 뺀 값에 해당 기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 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액의 감액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 일까지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본다.

나.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에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우선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② 부부감액과 ③ 소득 역전 방지감액을 각각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조정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매월 받게 됨.
- (기준연금액) 당해연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년도의 전전년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중순경 고시함.²⁾

2)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예컨대 2025년도 기준연금액(342,510원)은 전년도인 2024년도 기준연금액(334,810원)에 전년도의 전전년도(2023년도)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를 곱한 금액(7,700원)을 더하여 결정됨.

□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함.³⁾

3)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액

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 참고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장애인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 (②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됨.⁴⁾

□ (③ 소득역전 방지감액) 소득인정액⁵⁾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⁶⁾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함.⁷⁾

를」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7) 「기초연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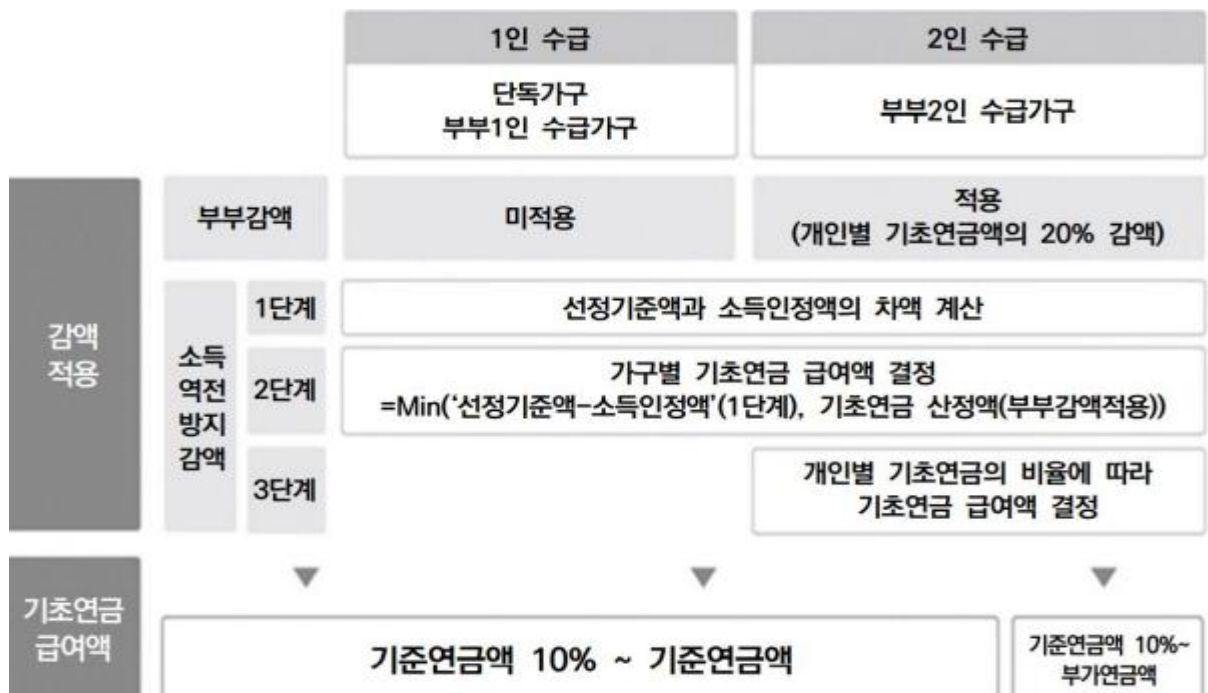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



자료: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액에 대한 ② 부부감액 및 ③ 소득역전 방지감액 적용 방식 >



자료: 보건복지부

다. 검토의견

- 부부감액제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적용되었는데, 처음에는 각각의 연금액을 16.5%씩 감액하기로 하여 2007년 4월 법률 제8385호로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제2항이 200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 시행 이전인 2007년 7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재정안정성 측면이 강조되며 감액률이 20%로 3.5%p 상향되었고,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면서 2014년 5월 법률 제12617호로 제정·공포된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 부부감액비율을 20%로 하는 부부감액제도가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하 “저소득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비율(이하 “부부감액비율”이라 한다)을 현행 20%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5%로 우선 낮추고, 2030년 1월 1일부터는 10%가 되도록 하면서(안 제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저소득 노인으로 구성된 부부가구와 그 밖의 부부가구에 적용되는 부부감액비율이 차등화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안 제8조제4항),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하여 이들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8)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07. 6. 29., 7면.

< 개정안에 따른 부부감액비율 개편안 >

구 분	현 행	개정안
소득 하위 40% 초과 70% 이하	20%	(현행과 같음)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 노인)		15% → 10% (‘27~’29) (‘30~)

□ 부부감액제도는 가구원이 공동으로 지출하는 유형의 비용(예: 주거비) 등으로 인하여 가구별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는데,

국민연금연구원(2024)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67.8만원)과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113.7만원) 간 비율은 1:1.68로 나타나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씩 삭감하는 부부감액(1:1.6)을 적정 수준이라 할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⁹⁾

□ 다만, 가구별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아니한다는 부부감액제도의 도입 취지는 ‘부부가구가 아닌 다른 유형의 2인가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오직 부부가구에 대하여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구와 다른 유형의 2인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각각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어머니(90세)와 아들(66세)로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 부부가구가 아니므로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함.

9) 김만수·이예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노인 소비지출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4-08, 국민연금연구원, 2024, 68면.

□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¹⁰⁾에서는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200%가 아닌 16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구가 ‘급여액 산정’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의 단계에서도 다른 유형의 2인가구에 비하여 이중으로 불리하게 처우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65세 이상인 甲과 乙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200만원이라 할 때, 甲과 乙이 부부이면 합산 소득인정액(400만원)이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2025년 현재 364만 8천원)을 초과하여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지만,

甲과 乙이 부부 외의 관계로서 2인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각자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2025년 현재 228만원)을 적용받아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부부감액제도 또한 적용되지 아니함.

□ 그러나,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되는 ‘최저보장수준’에도 가구별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으며,¹¹⁾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호주·네덜란드 등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부부감액

10)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제도를 두고 있는 점,¹²⁾ 개정안에 따른 부부감액비율의 하향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 노인으로 구성된 부부가구에 대한 부부감액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818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25) >

(단위: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1인가구 대비 감액률	-	17.8	30.0	36.3	40.6	43.8	46.3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단위: 조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2,760	2,919	3,438	7,283	7,689	24,089	4,818

주: 제도운영비를 제외한 기초연금급여(국비·지방비 합산)에 대한 재정소요만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부부감액제도를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김태년의원(의안번호 제4027호), 안상훈의원(의안번호 제10790호) 및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1669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국가별 부부감액 비율: 노르웨이(10%), 스웨덴(10.5%), 뉴질랜드(14.1%), 호주(24.6%), 네덜란드(31.5%)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 부부감액비율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

구분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부부감액비율 관련 주요 내용
1	2204027	김태년의원 (’24. 9. 13.)	○ 부부감액제도 폐지 (’25~)
2	2210790	안상훈의원 (’25. 6. 13.)	○ 부부감액제도 폐지 (’26~)
3	2211669	이수진의원 (’25. 7. 23.)	○ 부부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 부부감액비율: (현행) 20%→(’26) 10%→(’27) 5%→(’28~) 0%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부부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부부감액제도의 도입 취지와 노인빈곤 완화 효과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경기도)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저소득 노인으로 구성된 부부가구에 대한 부부감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수반되므로,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기준 기초연금 비중: 11% (복지예산 총액의 24%)

□ (경기도 용인시) 개정안과 같이 저소득 노인으로 구성된 부부가구에 대한 부부감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할 경우 시(市) 재정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국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분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현재 비용분담률: 국가(80%), 경기도(4%) 및 용인시(16%)

문 의 처

02)6788-5506